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폐기물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완섭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, 환경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보험증서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18. ~ 5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음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 중 “원본”을 “원본(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증서를 환경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) ① · ② (생 략) ③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 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 험증서 <u>원본</u> 을 환경부장관이나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 <u><신 설></u>	제22조(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원본(전자문서로 발급된</u> <u>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</u> <u>다. 이하 같다)</u> ----- --. ④ <u>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</u> <u>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</u> <u>험계약을 갱신한 자가 처리이행</u> <u>보증보험증서를 환경부장관이</u> <u>나 시 · 도사가 전자적으로 확</u> <u>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</u> <u>는 제3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</u> <u>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폐자원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64